

행정전문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운영 규정

2010.03.01. 제정
2023.03.0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행정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최고관리과정(이하“과정”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01.>

제2조(명칭) 이 과정은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라 한다. <개정 2023.03.01.>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이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최우선시 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본교의 명예를 존중할 수 있는 자
2.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본교의 사회적 참여와 산학연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5조(입학제한자격) 이 과정에 입학을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다.

1. 업체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사회적 윤리성 확보가 어려운 자
2. 과정 운영 면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

제6조(입학지원서류) 이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기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학허가) 이 과정의 입학허가는 대학원위원회의를 통하여 행정전문대학원장이 한다.

제8조(입학절차)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의 납부, 기타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학기

제9조(수업연한) 이 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학기)이 과정은 2학기로 운영되며,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고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이다.

제4장 등록·휴학·복학·제적·징계

제1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휴학) 질병 또는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휴학기간)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복학)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복학 할 수 있으며, 복학 당시의 해당 기수로 소속된다.

제15조(제적)이 과정의 학생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기타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6조(징계) 이 과정의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학·퇴학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장 학비감면

제17조(학비감면) 이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비감면을 해 줄수 있으며, 학비감면의 대상자 및 감면 비율 및 감면 학기수는 각 호의 1과 같다.

1. 삭제 <2023.03.01.>
2. 삭제 <2023.03.01.>
3. 삭제 <2023.03.01.>
4. 삭제 <2023.03.01.>
5. 삭제 <2023.03.01.>
6. 고려대학교 교우 : 50%(2학기) <개정 2023.03.01.>
7. 원우회장 : 100%(1학기)
8. 수석부회장 : 50%(1학기)
9. 수석총무 : 50%(1학기)

제18조(기타 학비감면) 본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비감면은 제17조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학기 기타의 학비감면 대상자 및 감면비율을 대학원위원회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3.01.>

제6장 수료

제19조(수료)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 한다.

제20조(수료시기) 수료시기는 2학기말로 한다.

제21조(기본 수료요건) 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강의 중 6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기본요건 기준은 연단위 산정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기타 수료요건) 이 과정의 학생들은 1, 2학기에 부여하는 소정의 연구과제물을 각각 제출하도록 하며, 이 또한 필수 수료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23조(미수료사유) 연구과제물의 미 제출자는 수료 기각 사유가 되며, 수료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의해 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24조(예외사항) 단, 병가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상기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료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며, 학생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수료심의위원회) 수료심의위원회는 대학원장, 교학부장, 담당 차(과)장에 의해 구성하도록 한다.

제7장 위원회의 운영

제26조(대학원위원회 준용) 최고관리과정 입학, 장학,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행정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46조~제49조를 준용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23.03.01.>

제27조(운영위원회) 최고관리과정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주임교수, 과정 교우회장, 과정 고문1인, 과정 교우회 사무처장, 과정 직전기수 회장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3.03.01.>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개정 2023.03.01.>

제29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개정 2023.03.01.>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